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조직 개편〉

■ 김병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65호)

2025. 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1
IV. 검토의견	4
1. 정부조직 개편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	4
2. 역대 정부조직개편 추이	8
3. 개편 내용	12
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12
나. 국내금융 기능의 재정경제부로의 이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18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과 에너지 사무의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이관	24
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30
마. 검찰청 폐지, 공소청(기소)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 신설	35
바. 과학기술부총리제 재도입 및 사회부총리 폐지	41
사.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47
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	50

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54
차.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59
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	6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기의원 등 166인
2. 발의연월일 : 2025. 09. 15.
3. 회부연월일 : 2025. 09. 16.

II. 제안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III. 주요내용

-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함(안 제2조)
- 나. 경제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부총

리 2인을 두며,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함(안 제19조)

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함(안 제23조 및 제30조)

라.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개편함(안 제27조)

마.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개편함(안 제28조)

바.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함(안 제29조)

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함(안 제35조 및 제37조)

아. 환경,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안 제41조 및 제43조)

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둠(안 제44조)

차. 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함(안 제4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DD20425호),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정부조직 개편의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

김병기위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48개)을 19부 6처 19청 6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50개)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담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직 개편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 등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여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로 개편, ②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에만 집중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 ③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 ④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 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법무부장관 소속) 및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을 각각 신설, ⑥ 과학기술

1)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보도자료, 2025.9.7.

및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제 재도입, ⑦ 중소벤처 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 설치, ⑧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 ⑨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 ⑩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하고, ⑪ 특허청을 지식재산처(국무총리 소속)로 격상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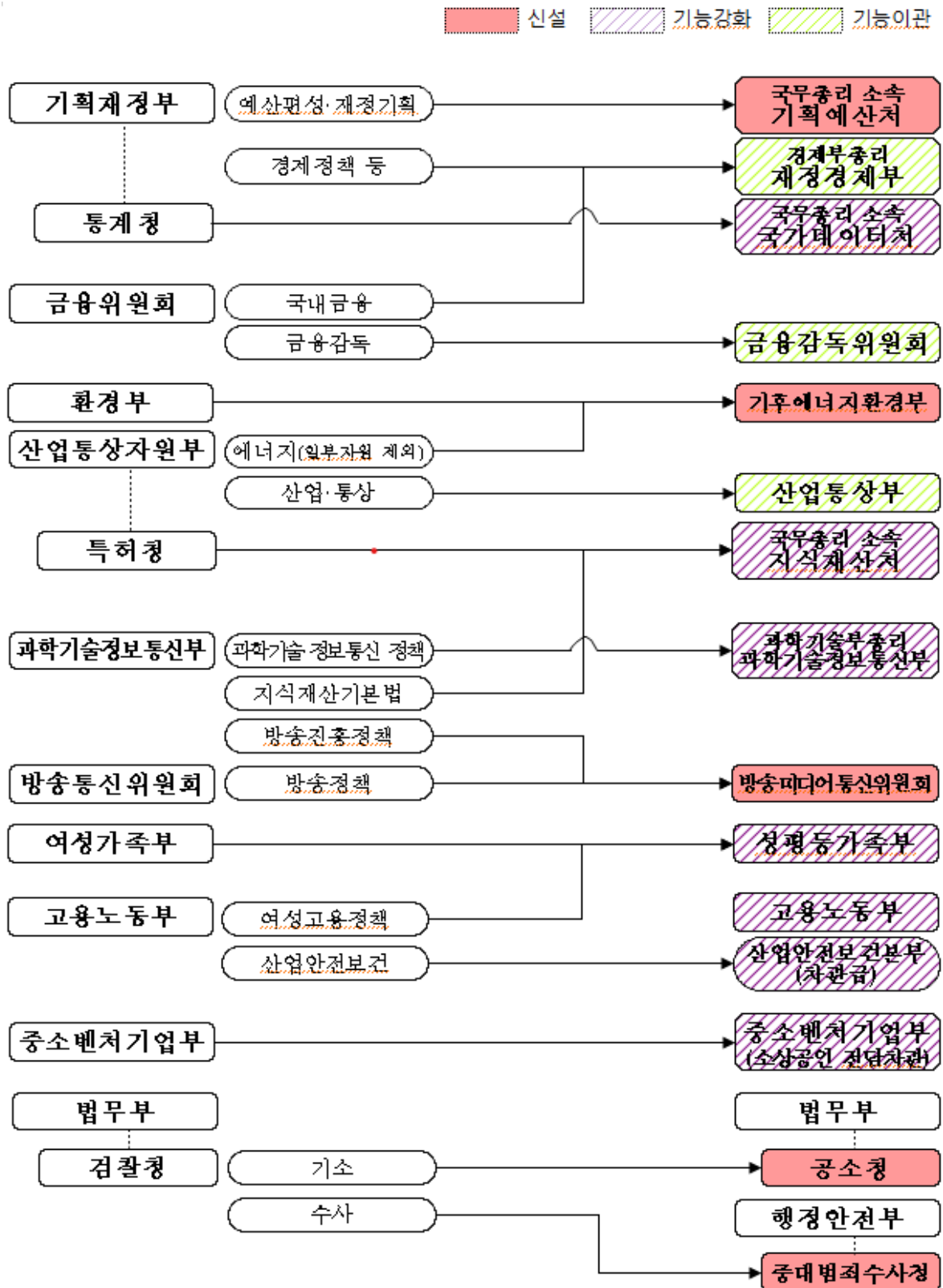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i)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리·재배치함으로써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 해소 및 분야별 전문화 추진, ii)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기능과 환경 기능을 통합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 지향, iii)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시대에 맞춰 정책 주체의 위상 강화 및 조직 확대 iv) 사회안전망 및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처의 역할 강화 등 개선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총 643개²⁾³⁾의 법률이 제·개정되어야 함.

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628개 법률 개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 개정(참고1 참조),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운영,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3개 법률의 제정 등 총 643개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해 보임. 다만, 개정안 부칙 제7조는 617개 법률의 개정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11개 법률의 개정사항이 추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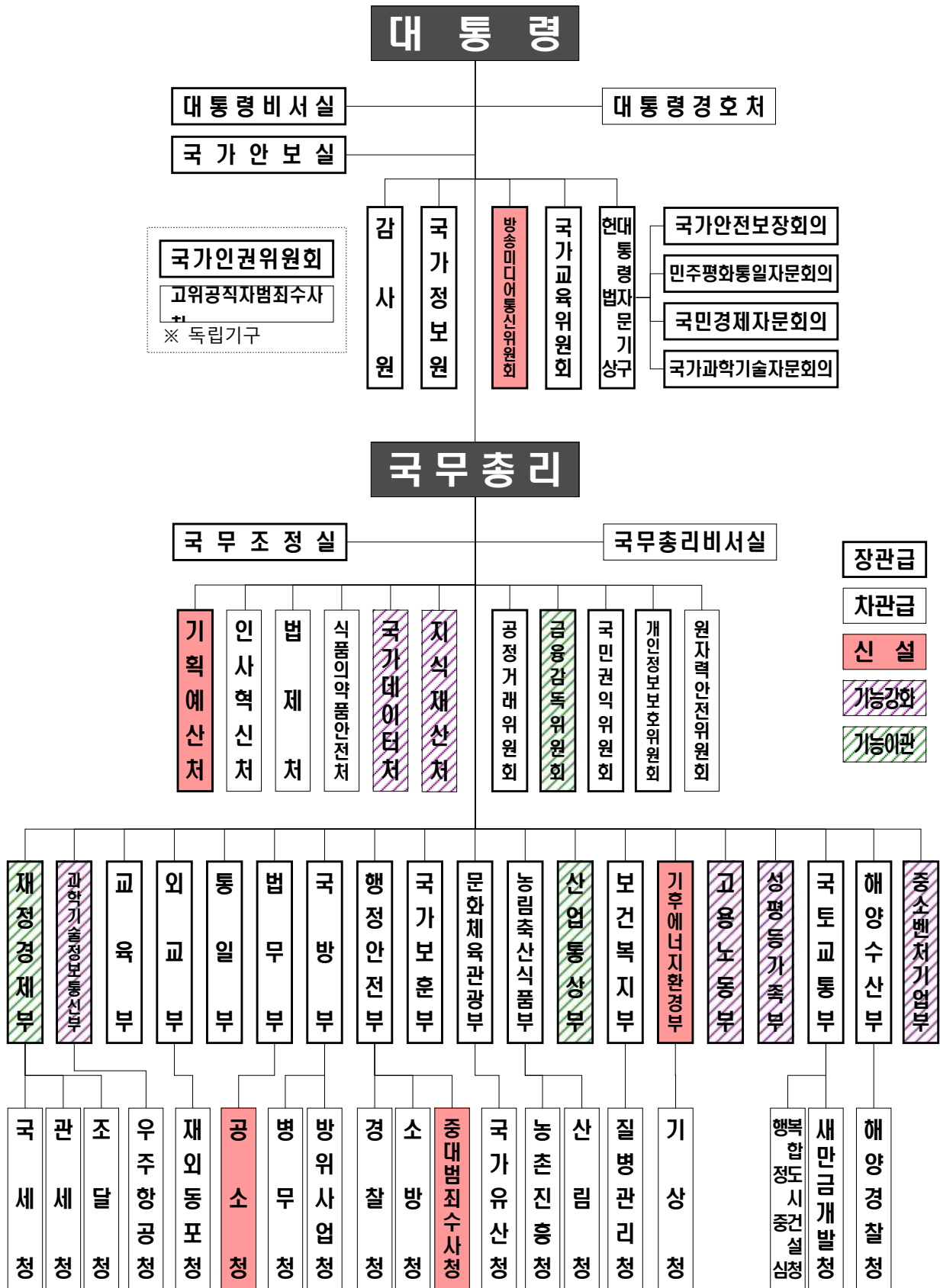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부칙으로 개정대상이 되는 법률과 검찰청 폐지 관련 개정대상이 되는 법률은 제외

【 정부조직개편 개관 】



자료 : 행정안전부

【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개편 후 정부 기구도 】



자료 : 행정안전부

2. 역대 정부조직개편 추이

정부조직은 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현실화하는 체계적 구조로, 각 정부는 시대적 상황과 국정 과제에 따라 조직 축소와 통합, 기능조정과 분산, 새로운 부처 신설 등을 반복하며 정부조직을 재편해 왔음.

참여정부 이후 정부조직개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⁴⁾

참여정부(2003.2.25~2008.2.24)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조직개편은 최소화하고 주로 기능조정을 활용하였는바,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 소방방재청 및 방위사업청 신설, 철도청을 공사화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 조정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⁵⁾을 신설함.

이명박정부(2008.2.25.~2013.2.24.)는 대부처주의 하에 정부조직 구성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중앙정부는 정책개발·조정 등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되, 민간이나 지방이 더 잘하는 것은 과감히 이양·이관하며, 비대한 조직을 축소 조정하여 중복된 정부의 조직 편제를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박근혜정부(2013.2.25.~2017.5.9)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창조경제의 원천으로 활용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 관련 업

4) 누리집, e-나라지표를 토대로 재작성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조직법상의 기구가 아닌 한시조직의 형태로 신설됨.

무 기능을 강화하는 등 17부 3처 17청으로 정부조직을 개편('13.3.2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542호, 2012.12.11. 공포, 2013. 9.12. 시행)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개청('13.9.23), 국가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의 업무를 조정·개편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로 설치,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 설치 및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함('14.11.19).

문재인정부(2017.5.10.~2022.5.9)는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정부기능의 재배치를 통해 18부 4처 17청으로 개편('17.7.26),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18부 4처 18청으로 개편('20.9.12)함.

윤석열정부(2022.5.10.~2025.6.3.)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23.6.5),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24.5.17), 우주항공 관련 혁신기술 확보 및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24.5.27)하고,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24.5.27)함.

【참여정부 이후 정부조직 개편 주요 개정사항】

구분	주요 개정사항
참여정부 (18부 4처 17청)	○ 과학기술부총리 신설(04.9.) ○ 소방방재청(04.3.) 및 방위사업청(05.7.) 신설, 철도청 폐지(04.12.) ○ 법제처(차관급) 및 국가보훈처(차관급)를 장관급으로 격상 ○ 보건복지부의 보육서비스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기획예산처의 행정개혁 기능을 행정자치부로 각각 이관
이명박정부 (15부 2처 18청)	○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 통합하여 대통령실 신설 ○ 부총리제 폐지, 특임장관 신설 ○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통합하여 국무총리실 신설 ○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 ○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신설 ○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통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 ○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일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 신설 ○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일부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신설 ○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일부 통합하여 지식경제부 신설 ○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일부 통합하여 국토해양부 신설 ○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가족·보육 기능을 이관하여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 ○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변경(10.3.) ○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변경(10.6.)
박근혜정부 (17부 3처 17청)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 경제부총리 신설 및 사회부총리 신설, 특임장관 폐지 ○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편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 대통령실을 대통령비서실로,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개편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 행정자치부 개편, 교육·문화·사회부총리 신설(14.11.)
문재인정부 (18부 5처 17청)	○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 설치 ○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행정안전부 신설 ○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설, 질병관리청 신설(20.8.)

구분	주요 개정사항
윤석열정부 (19부 3처 19청)	○ 국가보훈부 개편,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을 신설 ○ 문화재청의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

자료 : 행정안전부

3. 개편 내용

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예산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관리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도록 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는 한편,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여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재정경 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안 제12조, 제19조, 제22조, 제29조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략)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u> 이 겸임하는 부총리, <u>교육부장관</u> 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u>제26조제1항</u>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재정경제부장관</u>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 <u>제29조제1항</u> ----- -----.
제19조(부총리) ①·② (생략)	제19조(부총리) ①·② (현행과 같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음)

③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④ 재정경제부장관-----

--.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29조제1항-----
-----.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

제26조(행정각부) ① (생략) 1. <u>기획재정부</u>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u>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u>에는 차관 2명을 둔다.	<u>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u> 제29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음) 1. <u>재정경제부</u> ② ----- ----- ----- ----<u>재정경제부</u>----- ----- -<u>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u> ·<u>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u>-- -----.
제27조(기획재정부) ① <u>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제30조(재정경제부) ① <u>재정경제부 장관---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u> ----- ----- -----<u>금융</u> -----<u>경제협력 및 국유재산</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2조제2항제4호,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현 기획재정부는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국고·세제·국제금융 등 기능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기금 운영 기능을 통합한 형태임.

【 기획재정부 연혁 】

구분	예산	재정 기획	경제 정책	정책 조정	세제	국고	국제 경제	국제 금융	국내 금융	금융 감독
'97년~'98년	재정경제원									
'98년~'08년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감위
'08년 ~ 현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자료 : 행정안전부

이는 예산·국고·세제 등 재정기능이 분산·운영되다 보니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취약하고,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

한 것으로 파악됨.⁶⁾

그러나 2008년 개편 이후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예산 편성 기능을 모두 가지게 됨으로써 경제정책 단기 목표(경기 부양, 물가 관리 등)와 장기적 재정 운용계획 간 상반된 전략목표가 혼재하여 내부갈등의 우려가 있고,⁷⁾ 그 역할 및 개별 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됨.⁸⁾

개정안은 재정 및 예산 부문이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이를 분리함으로써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가 오랜 기간 여러 기능을 통합하면서 복잡해진 업무를 분산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 체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⁹⁾

참고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

6)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178087호, 행정자치위원회, 2008.2.),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7.31. 참조

7)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기획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을 요구하는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같은 단기적 목표와 충돌할 경우 단기적 목표가 이기게 돼 있다”며 “2008년 기재부로 통합된 이후 기획예산 기능이 많이 침체됐다”고 말했다.(이명박 작품 기재부, 18년 만에 ‘재정부+예산처’로 재분리, 한겨레신문, 2025.9.7.)

8) “기재부 분리될까…대선에 걸린 예산권”, 머니투데이, 2025.5.4., “기재부 왕 노릇” 예산편성권 분리? 미국 따라 했다는데[사실은], SBS 뉴스, 2025.5.2., “기재부 또 한 번 쪼개나요?”, 주간경향, 2025.5.5.,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7.31. 등 참조

9)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7.31.

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기획재정부 관련 정부조직법안 계류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209646	허성무의원	25.4.8.	•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분리
2209669	오기형의원	25.4.9.	•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
2210672	차규근의원	25.6.5.	•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 정책까지 소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671호)의 의결을 전제
2211530	윤준병의원	25.7.17.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부 총리로 격상,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2212349	정일영의원	25.8.25.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나. 국내금융 기능의 재정경제부로의 이관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국내금융에 관한 사무를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생략) 4. 「 <u>금융위원회</u> 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u>금융위원회</u>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현행과 같음) 4. -- <u>금융감독위원회</u> ----- <u>금융감독위원회</u>
제27조(기획재정부) ① <u>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u>	제30조(<u>재정경제부</u>) ① <u>재정경제부장관---경제정책의 수립·총괄·조정-----</u> ----- ----- ----- <u>금융</u> ----- <u>경제협력 및 국유재산</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	

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2조제2항제4호,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 다. (생략)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제1항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무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1조제1항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5조에 관한 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의 소관사무	국가데이터처장
특허청장의 소관사무	지식재산처장

현 금융위원회는 2008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¹⁰⁾ 재정경제부의 국내

10)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분산된 이후 10년 만에 다시 통합되게 되었는데, 이는 금융정책 및 법령의 제·개정은 재정경제부, 감독 규정의 제·개정은 금융감독위원회, 일선 금융회사 검사는 금융감독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카드채 사태나 외환은행 매각 등에서 나타난 책임 회피 및 시장에

금융(금융정책), 외국환거래 건전성 감독, 금융정보분석(FIU)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 기능(감독정책)을 통합하여 설치된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¹¹⁾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 금융기관의 설립·합병·전환·경영 인·허가, 자본시장 관리·감독·감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건전성 감독 업무 등임.

【 금융위원회 연혁】

구분	예산	경제 정책	정책 조정	세제	국고	국제금융	국내금융	금융감독	
								감독정책	감독집행
'97년~'98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			은감원/증감원 보감원/보증금
'98년~'08년	기획 예산처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08년 ~ 현재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자료 : 행정안전부

이에 따라 금융정책의 주체는 기획재정부(국외금융)와 금융위원회

대한 과도한 개입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파악됨(「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제178087호, 행정자치위원회, 2008.2.).

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제재(制裁)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전환, 영업의 양수·양도 및 경영 등의 인가·허가에 관한 사항
4.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에 관한 사항
5.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금융 및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양자 간 협상, 다자 간 협상 및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9.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국내금융)로 이원화되었는바, 양 기관 간 금융 시장과 관련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되지 못하는 등 한계로 인해 국가 거시건전성 위협에 효과적 대응과 규제가 어려울 수 있고,

최근 글로벌 자금 흐름, 해외 투자자·금융기관의 국내 영향력 증대 등 경제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 기능의 정책 주체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¹²⁾¹³⁾

이에 개정안은 기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 온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거시건전성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것임.

다만, 국내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편입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¹⁴⁾

참고로, 경제와 금융 기능의 연계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영국·독일·호주 등은 국제금융 및 국내금융 정책을 재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국제금융을 재무성, 국내금융을 금융청에서 각각 관장하고 있음.

12) 국가 거시건전성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금융 및 국내금융 정책과 경제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우리 경제의 대외부문 여건과 정책 대응방향’, 외환위기20주년기념 특별 심포지움, 기획재정부, 2017.9., ‘KIEP, 국제금융 전문가 간담회 참고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참고)

13)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7.31.

14)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4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7.31.

【 금융 및 경제 기능 연계 관련 해외사례 】

구분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일본
국제금융정책	기재부	재무부	재무부	재무부	연방 재무부	재무성
국내금융정책	금융위					FRS, OCC, FDIC, NCUA, SEC, CFTC
금융감독정책						
금융감독집행	금감원					

자료 : 행정안전부

안 제2조제2항제4호 및 제30조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안 부칙 제1조제1호 본문에 따라 공포 후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계연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에서 금융정책업무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¹⁵⁾이 소관 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로의 국내 금융산업 정책 이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15)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제2203771호, 2024.9.6. 제안),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제2210671호, 2025.6.5. 제안),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제2212966호, 2024.9.6. 제안)

【 금융위 관련 정부조직법안 계류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203771	김현정의원	24.9.6.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폐지하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각각 신설
2210672	차규근의원	25.6.5.	대통령 소속으로 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무부로 변경하여 국내금융 정책까지 소관

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과 에너지 사무의 기후에너지환경 부로의 이관

개정안은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고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에너지 사무이관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고 차관¹⁶⁾ 및 통상교섭본부 체계로 개
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제41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제29조(행정각부) ② ----- ----- ----- -----재정경제 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제38조(산업통상자원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1조(산업통상부) ① 산업통상부장관----- -----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사	② 산업통상부-----

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 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u>산업통상자원부</u>에 차관보 1명 을 둘 수 있다. <u>제40조(환경부)</u> ① <u>환경부장관</u>은 <u>자 연환경</u>, <u>생활환경</u>의 <u>보전</u>, <u>환경오 염방지</u>, <u>수자원의 보전·이용·개 발 및 하천</u>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 다. ② <u>기상</u>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환경부장관</u> 소속으로 기상 청을 둔다. ③ (생략)	----- -----. ③ <u>산업통상부</u>----- -----. <u>제43조(기후에너지환경부)</u> ① <u>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u>---<u>기후변화 대 응, 자연환경</u>----- -----<u>보전·이용·개발, 하천 및 에너지</u>-----. ②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③ (현행과 같음)
--	---

파리협정의 당사국인 우리나라의 수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에 따르면, 2018년 온실가스배출량(727.6백만톤)의 40%(291백만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으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36.6백만톤이 목표임.

국제 평가기관인 Climate Action Tracker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NDC 정도는 G20 국가 중 “심각하게 불충분(Highly insufficient)”¹⁷⁾한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023년 수립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에

16) (현재) 제1차관(산업), 제2차관(에너지), 통상교섭본부 → (개편후) 차관(산업·자원), 통상교섭본부

17) Climate Action Tracker 홈페이지,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너지 전환(석탄발전 감축, 원전 및 재생에너지 믹스, 태양광 및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수요 효율화) 부문에서 145.9백만톤 및 산업 부문에서 230.7백만톤으로¹⁸⁾ 전체 감축량의 86.3%를 차지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기반 발전은 약 60%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약 9%로 OECD 평균인 34%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¹⁹⁾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에너지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²⁰⁾을 신설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소경제 활성화,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등²¹⁾ 탄소중립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으나, NDC 달성 및 재생에너지 보급 등에서 실적 미흡,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업 유인책 부재, 전력운영시스템과 시장구조 개선 필요 등 다양한 지적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²²⁾

종합하면, 우리나라 NDC 계획과 감축 실적 간에 괴리가 상당하고

18)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3.4.

19) “‘A structural dependence on heavy industry’: can South Korea wean itself off fossil fuels?”, The Guardian, 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5/aug/16/a-structural-dependence-on-heavy-industry-can-south-korea-wean-itself-off-fossil-fuels

20)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탄소중립 대응 조직개편 전력혁신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2관 4과 신설”, 한겨레, 2021.8.3., “산업부, 에너지 차관 신설·전담 조직 확대·탄소중립 선제 대응”, 경향신문, 2021.8.3., “[데이터로 보는 세상] ‘2050 탄소중립 선언’, 달성 가능한 선언인가?”, 미래한국, 2021.2.8., “산업부 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탄소중립 선제 대응”, ZD넷 코리아, 2021.8.3.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21) 「2021 연차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2022.6월.,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산업연구」 vol.48., no.1. 2024. 등 참조

22)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8.12., 「탄소중립 산업 전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동력」, ISSUE&POLICY, (사)넥스트, 2025.6.20., “탄소중립 전문가가 말해주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그리고 녹색성장의 중요성”,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4.10.30., “탄소중립, 구호만으론 안 된다” 기후전담부처 신설, 해법 뭘까, “더 나은미래, 2025.2.6. 등 참조

현 기후변화 관련 정책들이 유관 부처 간 협업과 조정 실패 등으로 인한 것으로, 에너지 거버넌스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임.²³⁾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하여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임무²⁴⁾이자 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임.²⁵⁾²⁶⁾

다만, 자원 분야의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두고 에너지와 자원 기능의 소관을 각각 분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활용은 에너지 비용 절감과 직결되고 나아가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과 안정적·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와 석유·가스·석탄 등 자원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²⁷⁾

23) 국회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무의 주관 부처와 주요 온실가스배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사이의 괴리, 불협화음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함(“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8.12.).

24) 환경부는 2024년 조직개편으로 ‘기후탄소정책실’, ‘기후위기대응단’ 등 기후 전담 조직을 신설하며,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파악됨.

25)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관련 해외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의 경우 2008년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를 신설하고,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로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을 수행하여 2024년 G7 중 처음으로 탈석탄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됨.

26) “이전 정부보다 나은 기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선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 함수’로 에너지를 ‘제약 조건’으로 인식하고 통합과 균형 원리에 기반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8.12.)

27) “에너지와 산업은 불가분의 관계”...기후에너지부 신설 사실상 반대, 한국경제TV, 2025.7.17., “이연주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안’ 우려...”환경 규제도 에너지 진흥도 안 돼”, 뉴시스, 2025.9.5.,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에 무게...에너지안보 우려 당내 반발 ‘변수’”, 이데일리, 2025.9.7., “에너지·자원 학회들 산업·에너지 분리 부작용 우려...산업통상부 개정안 철회해야”,

뿐만 아니라 기후에너지부 통합 및 탈석탄에 성공한 영국과 달리 독일의 경우 기후와 에너지를 합하는 부처(연방경제기후보호부) 신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 통합 전 부처로 회귀한 사례도 있음.²⁸⁾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자원산업 정책과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 정책과의 연계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게 되므로, 산업과 통상 분야의 업무 전문성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정부조직법안 계류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204163	김소희의원	24.9.23.	•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의 사무에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며,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2204756	김소희의원	24.10.17.	•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게 함
2208373	박정의원	25.2.24.	•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

한국일보, 2025.9.10.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8.12. 참조

“환경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저희가 저는 그동안에 전기차하고 전기버스 육성과 관련해서 진흥화 관련해서 환경부와 씨름해 왔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전략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하고 사실 이것은 환경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이잖아요.” “가스나 석유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전력하고 직결돼서 미국에서 GNE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각 부서 간에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조율할 거냐, 전략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상회의록 발췌」, 2025.9.5.)

28)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8.12.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부장관이 기후변화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며 기후환경부에 차관을 2명 두도록 함 • 기후환경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
2208938	허성무의원	25.3.14.	•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주관 부처로서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
2211308	박지혜의원	25.7.7.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
2211530	윤준병의원	25.7.17.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2212538	위성곤의원	25.8.29.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하던 에너지·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

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방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② (생략) 1. 「 <u>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u> 」 제3조에 따른 <u>방송통신위원회</u> <u>제29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u>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u>방송·통신의 융합·진흥</u>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 ----- -- <u>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u> <u>제31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u> ① --- ----- ----- ----- ----- ----- <u>이용, 인공지능 정책,</u> ----- ----- <u>방송·통신</u> <u>의 융합, 통신의 진흥</u> ----- ----- -----.
부 칙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사무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무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1조제1항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5조에 관한 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의 소관사무	국가데이터처장
특허청장의 소관사무	지식재산처장

현행 방송·통신에 관한 사무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는바, 보도·뉴스 관련 방송, 이용자 보호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비보도 등 공공·공정·공익성과 무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음.

【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사무 분장 】

구분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능	공익성 높은 방송사업에 대한 정책 (지상파, 종편·보도PP)	상업성 강한 방송사업에 대한 정책 (유료방송, 홈쇼핑PP)
주요 정책대상	지상파, 종편·보도PP	(방송) 유료방송, 홈쇼핑PP (부가통신) OTT플랫폼 등

주) 2025.5월 기준 종편PP는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4개 채널, 보도PP는 YTN, 연합뉴스TV 등 2개 채널임(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정부조직개편 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정책 조정 및 규제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된 후 방송심의·규제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정부조직개편 시 산업진흥 측면에서 유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IPTV), 홈쇼핑PP, 일반PP 사무를 소관하게 되어 인력양성·기술개발·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방송산업 전반의 진흥정책(허가·등록 등 진입규제, 이용약관·요금 승인(신고), 기술규제 등)을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급속도로 모호해지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 TV·IPTV·OTT(Over-the-top media service,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가 서로 다른 규제와 절차로 이원화됨으로써 방송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갈등 및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부처 간 일부 영역이 겹침으로 인한 정책 조율 및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음.²⁹⁾³⁰⁾

이에 더하여 디지털 플랫폼, AI 콘텐츠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대응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계,³¹⁾ 이원화된 방송정책의 비효율성, 글로벌 플랫폼(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에 대한 규제 형평성 등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³²⁾³³⁾³⁴⁾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산된 방송정책의 주체를 일원화하여 방송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방송진흥정책기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방송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방

29)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제, 콘텐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방송진흥 기능을 수행함.

30) ‘유료방송 30년에 대한 조망과 정책 제언’, Media Issue & Trend, Vol.65,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24., ‘방송통신 규제 기구 이원화에 따른 규제관할권 갈등 사례 분석 : 700메가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의 지대 추구적 행위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연구」 2017년 가을호, 2017.10. 등 참조.

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 심사과정에서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에 만들어지고 미국의 FCC를 모델로 해서 된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봐요.” 등 관련 사항이 지적됨(제428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소위 제1차 회의록, 2025.8.27.).

32) “공룡 플랫폼 구글 인앱결제 ‘갑질’ 논란…관계부처 종합 TF 필요성 제기”, 뉴스투데이, 2020.11.21. “이해진·김범수 “해외 플랫폼과 형평성 고려해 달라”, 에너지경제, 2021.10.21., “포털 뉴스 공정성 따지겠다는 방통위…학계 “구글 등과 역차별 우려” 지적도“, 뉴시스, 2024.12.12. 등 참조

33) “방통위를 없애야 하는 세가지 이유”, 한겨레신문, 2024.8.13. 등, “방통위에 쏟아진 해법 “발전적 해체까지 고려해야”, 전자신문, 2024.8.19., “[비즈톡톡] 방송통신 진흥 정책·규제 기능 한 곳에 이관?...폐지 갈림길 선 방통위”, 조선일보, 2025.7.28. 등 참조

34) 2024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강제 및 고액 수수료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글·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불 거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고가 인상 등이 지적됨(202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4. 참조).

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처리(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25.9.11.)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송사무의 이관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개정안 관련 정부조직법안 계류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209881	최민희의원	25.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 신설
2212350	이훈기의원	25.8.25.	- 방송영상 플랫폼 및 콘텐츠를 포함하는 미디어 관련 산업 진흥 업무를 통합·포괄하는 미디어콘텐츠부 신설 - 방송영상미디어의 공적책무 관리·감독, 시청자 주권 보호 및 이용자 분쟁 조정을 위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마. 검찰청 폐지, 공소청(기소)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 신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을 신설하여, 공소청에서는 검사에 관한 사무, 중수청에서는 중대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37조).

현행	개정안
<u>제32조(법무부) ①</u> 법무부장관은 <u>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u>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u>검찰청</u>을 둔다. ③ <u>검찰청</u>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u>제35조(법무부) ①</u> -----<u>검</u> <u>사사무</u>----- ----- -----. ②----- -----<u>공</u> <u>소청</u>-----. ③ <u>공소청</u>----- ----- -----.
<u>제34조(행정안전부) ① ~ ⑧</u> (생략) <u><신설></u> <u><신설></u>	<u>제37조(행정안전부) ① ~ ⑧</u> (현행과 같음) ⑨ <u>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u> ⑩ <u>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

현행 검찰청은 「검찰청법」 제2조³⁵⁾ 및 제3조에 따라 검사의 사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으로 구성되는데, 대검찰청은 검찰청 지휘·감독, 검찰 정책 수립 등, 고등검찰청은 항고사건 수사, 항소심 공판 수행, 국가소송 등, 지방검찰청은 사건의 수사, 기소·불기소 결정, 1심 공판 수행 등을 각각 수행함. 검사의 권한으로는 기소권, 수사권(부패·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한함)³⁶⁾, 영장

35) 「검찰청법」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36)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일반 형사범죄에 관한 수사는 경찰에서 수행함.

청구권³⁷⁾ 등이 있음.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국회는 2017년 말 사법개혁특별위원회³⁸⁾를 구성하여 검찰-경찰 간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다수의 검찰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 및 심사를 이어왔음.

2020년 「검찰청법」(법률 제16908호, 일부개정 2020.2.4., 시행 2021.1.1.) 개정을 통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였고,³⁹⁾

2022년 「검찰청법」(법률 제18861호, 일부개정 2022.5.9., 시행 2022.9.10.)⁴⁰⁾ 개정으로 검찰 수사대상의 범위를 6대 중요 범죄에서 부

37)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8)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번호 제2011153호, 2017.12.29.

39)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40)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패범죄,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고, 검사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하지만, 검찰에 여전히 수사권 및 기소권과 영장청구 권한이 허용되고 있어 검찰에 대한 권한 남용 및 공정성 훼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⁴¹⁾

이에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각각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분산함으로써 기존 검찰에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복수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및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또한 안 제3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안 부칙 제1조제2호 본문에서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바, 이는 절차·제도 정비, 청사 마련 등 정부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검찰청 폐지,⁴²⁾ 공소청 설치·운영,⁴³⁾ 중수청 설치·운영⁴⁴⁾ 관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법제사법위원회, 2025.7.9., 7.28. 및 9.4.),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일까?: ‘검수완박’이면 ‘부패완관’될까」, 참여사회, 하태훈, 2021. 6., “세계 유일 ‘수사·기소권 독점’…권력 나눠야 전횡 막는다”, 한겨레, 2012.12.11., “[위기의 검찰] ② 권한 오·남용 어떻게 막나”, 서울신문, 2012.12.3.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42)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제2210730호)

43) 「공소청법안」(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제2203354호),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제2210728호)

런 법안들이 소관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유예기간 내에 세부 절차 및 제도 정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⁴⁵⁾

한편, 검찰조직의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먼저, 개정안을 수용하자는 입장은 검찰청 폐지를 통해 검찰의 권력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민주적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동일 기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표적 수사’나 ‘정치적 수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기능 분리를 통해 불공정 수사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수사와 기소의 역할 및 책임이 명확해짐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⁴⁶⁾

반면,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은 헌법적·제도적 정합성 측면에서 검찰총장은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직위(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이므로 법률로써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위배되고,⁴⁷⁾

44) 「중대범죄수사청법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제2203346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제2210732호)

45) ‘정부조직 개편방안 발표’, 행정안전부, 2025.9.7.

46)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법제사법위원회, 2025.7.9., 7.28. 및 9.4.)에서 검찰 정권에 대한 반성이라는 맥락에서 수사·기소 전면 분리 필요, 검찰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수사구조 개편이 필요, 검찰 수사·기소 독점체제의 폐해, 조직적 수사역량의 상실과 피해회복 미흡, 권한 남용 견제를 위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수사과 기소의 완전한 분리 필요, 검찰에 수사권이 남아있으면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고, 보완수사를 빙자한 불공정 처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 필요 등 긍정적인 의견들이 제시됨.

47)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에 “헌법상 ‘검찰총장’ 직위가 규정돼 있고, 상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 분리가 오히려 반쪽 수사 또는 반쪽 기소로 이어져 수사 효율과 형사 사법 기능의 약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⁴⁸⁾

다음,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을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집중되어 조직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우려를 해소하고,⁴⁹⁾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원활한 협조 및 경쟁을 통한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등 긍정적 견해가 있는 반면,

행정안전부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거의 모든 수사 기능을 관장하게 되어 수사권력의 집중이 발생할 수 있고, 3개 기관 간 수사 기능의 중복 가능성 우려, 기존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효율적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음.⁵⁰⁾

설 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다”며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헌법 명문규정에 반하는 위헌”이라고 했다. 공소청 수장에 검찰총장 이름만 붙이는 것도 “헌법의 규범력을 무시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하위 법률로 완전히 형해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학계 “헌법 위배 될 수도”, 중앙일보, 2025.9.9.),

‘검찰개혁 공청회’(법제사법위원회, 2025.9.4.) 등 참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은.....“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모든 것이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에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檢총장 대행 “검찰, 법률로 개명 당할 위기” 위헌성 부각”, 파이낸셜뉴스, 2025.9.8.)

48)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법제사법위원회, 2025.7.9., 7.28. 및 9.4.)에서 검찰은 헌법적 근거를 둔 국가기관으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 농후, 수사기관의 복수화로 국가 총수사량은 증가하나 사법통제 시스템이 무력화되어 인권침해와 위법 수사 가능성. 실제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구제 역량이 현저히 저하 우려, 국가수사역량 저하 및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 2021년 수사권조정 이후 수사품질·적정성 논란 심화, 3대 특검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점,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유럽평의회 46개국 중 35개국에서 검찰 수사권 행사)가 아닌 점 등 우려가 제기됨.

49)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찬성” 51%”, 2025.9.12., 오마이뉴스, “법무부 소속 ‘중수청’, 검찰개혁 아냐”...시민단체도 반발“, 이데일리, 2025.9.3.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바. 과학기술부총리제 재도입 및 사회부총리 폐지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과기정통부장관”)이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 정책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19조 및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략)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u> 이 겸임하는 부총리, <u>교육부장관</u> 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u>재정경제부장관</u>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 <u>제29조제1항</u> ----- ----- -----.
제19조(부총리) ①·② (생략) ③ 부총리는 <u>기획재정부장관</u> 과 <u>교육부장관</u> 이 각각 겸임한다. ④ <u>기획재정부장관</u> 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	제19조(부총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재정경제부장관</u> ---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④ <u>재정경제부장관</u> ----- -----

50)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원한 집중 등 우려도 산적”, YTN, 2025.9.7., “형사법학자 76% “보완수사 필요”, 50% “중수청 신설 부정적””, 법률신문, 2025.9.6., “행안부 소속 ‘중수청’ 우려 목소리... ‘공룡 수사 조직’ 되나”, 2025.9.5., 아시아경제, “검찰청 폐지·중수청 행안부 산하 확정...기능 중첩·견제 장치 부재 우려”, 뉴스1, 2025.9.7., “정성호 “중수청, 행안부 두면 통제 어려워...검찰과 다르다고 담보 못 해”, 경향신문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⑤ <u>교육부장관</u>은 <u>교육·사회 및 문화</u>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u>이 겸임하는 부총리, <u>교육부장관</u>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u>과학기술 및 인공지능</u>----- -----.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 -----<u>재정경제부장관</u>---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u>----- ----- ----- ----- ----- ----- -----<u>제29조제1항</u>----- -----.
---	---

‘부총리제’는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정각부로 구성된 헌법 체계에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19조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고, 이외에도 부총리는 국무총리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동시에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내외 정책의 조정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강화 필요성에 따라 부처 간 협력

과 정무적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부총리제의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 부총리를 2인으로 확대하면서 통일원장관이 겸임하는 통일부총리가 신설됨으로써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의 기획·운영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각부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 바 있음. 1998년 부총리제는 전면 폐지되었다가,⁵¹⁾ 2001년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교육부총리를 겸임하게 함으로써 부총리제는 부활하였고, 2004년 9월 과학기술부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⁵²⁾하여 3인 부총리 체제로 확대되었다가 2008년 부총리제는 폐지된 후 2013년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됨으로써 부활하였고, 2014년 교육부장관이 교육·사회·문화부총리를 겸임하며 2인 부총리 체제로써 오늘에 이르고 있음.

51) 「정부조직법」 개정, 1998.2.28.

52) 「정부조직법」(법률 제7217호, 2004.9.23. 일부개정 및 시행) 제19조의2(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부총리 3인을 둔다.

②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재정경제부장관·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⑥ 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각부를 총괄·조정한다.

【 부총리제 연혁 】

기간	부총리 운영		
'63.12.~'90.12.	경제부총리 ^{신설} (경제기획원장관 겸임)		
'90.12.~'94.12.	경제부총리 (경제기획원장관 겸임)	통일부총리 ^{신설} (통일원장관 겸임)	
'94.12.~'98.2.	경제부총리 (재정경제원장관 ^{개편} 겸임)	통일부총리 (통일원장관 겸임)	
'98.2.	폐 지 * 김대중정부 출범 시		
'01.1.~'04.9.	경제부총리 ^{신설} (재정경제부장관 겸임)	교육부총리 ^{신설}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겸임)	
'04.9.~'08.2.	경제부총리 (재정경제부장관 겸임)	교육부총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겸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과학기술부장관 겸임)
'08.2.	폐 지 * 이명박정부 출범 시		
'13.3.~'14.11.	경제부총리 ^{신설}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14.11.~현재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교육·사회·문화부총리 ^{신설} (교육부장관 겸임)	

자료 : 행정안전부

최근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고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함에 따라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은 특정 정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 전 부처의 정책 영역에 관련되는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글로벌 첨단과학 기술패권 경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⁵³⁾

더욱이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5.1.21. 제정)에 따른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그 조직의 위상이 대통령 자문위원회이고 심의·의결 사항에 관계 부처의 정책·업무 조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⁵⁴⁾ 전 세계적 인공지능 정책 및 투자 강화 추세⁵⁵⁾에 맞게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⁵⁶⁾⁵⁷⁾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여 과기정통부장관이 주요 국가전략 및 정책 분야인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및 기획·조정 능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53) 임형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부의 역할과 실패 비즈니스”, 한국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경인행정학회, 2017, p.10.

54)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3.4.

5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글로벌 AI 시장은 연평균 18.5%(‘22~‘24) 증가, ’24년 약 925.1조 규모로 성장하고 있음.

56) “부처별로 분산된 인공지능(AI)·데이터 정책 심의조정 기구 필요”, 전자신문, 2020.12.13.,

57)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 전 보완을 위한 입법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2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3.4.

【 과학기술부총리제 관련 정부조직법안 계류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200010	황정아의원	24.5.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 및 관련 산업·인력·지역혁신 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
2209881	최민희의원	25.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하고 방송에 관한 사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정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장관 소속으로 우정청 신설
2211273	박충권의원	25.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정책에 관하여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함
2211530	윤준병의원	25.7.17.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이원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외교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재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부총리로 격상, 해양수산부 복수차관제 도입

사.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 2차관을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① (생략)	제29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에는 차관 2명을 둔다.	② ----- ----- -----. --, 재정경제부----- ----- -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정부조직상 복수차관제는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 방향이 논의된 후, 2005년 7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재정경제부 등 4개 행정부처에 도입되었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 시 복수차관의 설치 여부는 단수차관의 통솔범위를 줄이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하여 정책 결정의 질과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된 것임.

2024년 12월 말 기준 복수차관을 운영하는 정부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지부, 국토교통부 등 7개가 있는바, 이들 기관에서 복수차관제가 도입된 공통된 기준으로는 부내 업무의 기능적 이질성이 있어 복잡·다양한 정책 기능을 분리할 필요성, 조직 규모 및 업무 부담이 과중하여 권한 분산과 업무 경감을 통한 조직 내 역할 분담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 등이 있겠음.

【 복수차관 부처의 소관사무 비교 】

구분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1차관	기획, 세제, 경제정책	연구개발	지역외교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정책	사회 복지	국토, 주택, 건설
2차관	예산, 재정	정보통신	외교정책, 다자외교	체육, 관광	에너지·자원	보건·건강	교통, 항공, 도로

자료 : 행정안전부

최근 코로나19 및 내수 침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⁵⁸⁾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로 804만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분야에 정책 역량이 집중되어 있어 소상공인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려났다는 문제의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구체적으로 2022년 기준 소상공인 기업 수는 766만 개, 종사자 수는 1,074만 명, 매출은 1,272조원으로, 이는 전체 기업의 95.1%, 전체 고용

58)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①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②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함. 2022년 기준 소상공인은 387만명임.

의 45.9%, 전체 매출의 17.0%를 차지하는 규모인데,⁵⁹⁾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기준 소상공인 정책 관련 예산 규모는 총 예산(15.2조원)의 35.5%(5.4조원)로, 이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 분야 예산(9.8조원)에 비해 작은 규모임.⁶⁰⁾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개선, 지원책 총괄 조정, 예산 확대 및 현장 의견 반영 등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음.⁶¹⁾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어 소상공인 정책 관련 인력 보강 및 전문성 강화, 현장의 변화 및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의 민첩성 확보 등 소상공인 관련 정책집행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9) 「2024년 소상공인 연차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2025.8.

60)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예산 관련 보도자료 참조

61) “소상공인들 “현실, 정책에 반영 안돼…중기부에 ‘전담차관’ 등 신설”, 경향신문, 2025.5.20.,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필요… 민생 의견 반영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7.2., “소상공인들 “자영업 전담 차관·민생수석실 신설해달라”, 이데일리, 2025.7.2., “소공연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뒀어”…110여개 정책제안”, 연합뉴스, 2025.4.29., “이재명 정부, 중기부 ‘존치’ 전망…소상공인 전담 차관 생길까”, 뉴스1, 2025.6.4., “소공연, 정청래 만나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9.3.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안전보건 본부를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신 설>	제44조(고용노동부) ① ----- ----- ----- ----- ----- -----. ②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최근 ESG 경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조성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업무 범위는 확장 추세이나,⁶²⁾ 산업현장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의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산업현장에서 인명피해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사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⁶³⁾⁶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상당함.⁶⁵⁾

62) 정부는 2021년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K-ESG 가이드라인 진단 항목 구성표상 사회(S) 영역 중 기업의 안전보건 관련 지표는 안전보건 추진체계, 산업재해율, 총 기록 재해율, 아차사고 빈도율 등으로 구성됨.

이와 관련, 2023년 기준 총재해자 수는 136,796명으로 전년 대비 6,448명(4.9%)이, 재해율은 0.66%로 전년 대비 0.01%p(1.5%) 증가하였고, 재해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손실액도 전년 대비 2조 9,923억원 (9.0%) 증가한 36조 4,2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산재예방감독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⁶⁶⁾를 실장급에서 차관급 기구로 격상시켜 산업현장 안전에 관한 사항을 엄중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입법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강화와 감독 기능의 전

63)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조사 대상이 되는 사고사망은 (’22년) 644명, (’23년) 598명, (’24년) 589명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현황】

업종별	전업종			건설업			제조업			기타업종		
	계	50인(억) 미만	50인(억) 이상	계	50억 미만	50억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계	50인 미만	50인 이상
’24년	589	339	250	276	181	95	175	75	100	138	83	55
’23년	598	354	244	303	181	122	170	96	74	125	77	48
’22년	644	388	256	341	226	115	171	82	89	132	80	52

유형별	계	떨어짐	부딪힘	끼임	맞음	깔림·뒤짚힘	무너짐	화재·폭발	감전	넘어짐	기타*
’24년	589	227	50	66	83	46	20	44	22	2	29
’23년	598	251	79	54	67	43	34	30	10	3	27
’22년	644	268	63	90	49	44	35	44	13	5	33

주) ‘기타’는 산소결핍, 익사, 화학물질 누출·접촉, 이상온도 접촉, 베임, 찢림 등 자료; 고용노동부

64) “줄지 않는 산업현장 사망사고… 근로자도 안전의식 몸에 익혀야”, 서울신문, 2023.9.4., “반복되는 공장사고…안전 사각지대 여전한 대한민국“, 헤럴드경제, 2024.11.30.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65) “이재명 대통령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해야…근로감독관 대폭 늘려라””, 머니투데이, 2025.7.10., “李대통령 “산재 위험성 있는 사업장 불시단속할 수 있어야”“, 조선일보, 2025.7.11.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66)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함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산업안전보건정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급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신설됨.

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소관하는 조직⁶⁷⁾의 위상 제고를 통해 부처 간 협업 및 정책의 조정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2022년 및 2023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총괄) 】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증감률(%)
사업장 수(개소)	2,945,136	2,976,026	-30,890	-1.0
근로자 수(명)	20,637,107	20,173,615	463,492	2.3
재해자 수(명)	136,796	130,348	6,448	4.9
재 해 율(%)	0.66	0.65	0.01	1.5
사망자 수(명)	2,016	2,223	-207	-9.3
사망만인율(‰)	0.98	1.10	-0.12	-10.9
업무상질병자 수(명)	23,331	23,134	197	0.9
근로손실일수(일)	63,845,877	60,701,773	3,144,104	5.2
산재보상금(백만 원)	7,284,941	6,686,486	598,455	9.0
경제적손실액(백만 원)	36,424,705	33,432,430	2,992,275	9.0

주: 1) 경제적손실액: 직접손실액(산재보상금)의 5배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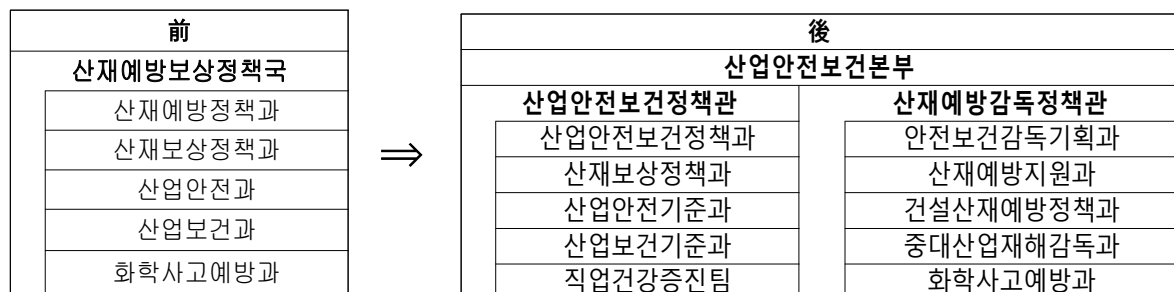
2) 재해자 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요양승인일 기준)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를 합산한 수임

※ 재해자 수에는 '18.1.1.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3) 사망자 수: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재 미보고 적발 사망자를 합산한 수임

※ 사망자 수에는 사업장 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자료 : 2024년 고용노동백서



자료 : 고용노동부

67)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에 따라 안전 분야 전문가와 행정 인력이 상당폭 충원됨(“노동부, 산업안전보건청 전 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본부 35명, 현장인력 106명 증원, 내년 1월 시행 중대재해법 후속 조치,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계획”, 한겨레, 2021.6.29. 등 참조).

참고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과 관련된 5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차관급 산업안전본부 설치 관련 정부조직법안 계류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201590	김태선의원	24.7.10.	•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독립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로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
2208263	박홍배의원	25.2.18.	•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신설
2211382	박주민의원	25.7.9.	•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건강보호 정책을 종합적·체계적 추진
2212441	이용우의원	25.8.27.	• 고용노동부가 정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도록 차관에 해당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설치

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고 경제활동 촉진, 여성 고용 정책,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6호 및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6조(행정각부) ① (생략)	제29조(행정각부) ① (현행과 같음)
1. 기획재정부	1. 재정경제부
2. 교육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 11. (생략)	4. ~ 11. (현행과 같음)
12. 산업통상자원부	12. 산업통상부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14. 환경부	14. 기후에너지환경부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16. 여성가족부	16. 성평등가족부
17. ~ 19. (생략)	17. ~ 19. (현행과 같음)
제42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5조(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장관---성평등정책----- ----- ----- ----- -----.
부칙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사무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무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1조제1항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5조에 관한 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의 소관사무	국가데이터처장
특허청장의 소관사무	지식재산처장

여성가족부는 여성부로 2001년 신설된 이후 2004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를 이관받아 2005년부터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고, 2008년 다시 보육·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면서 여성부로 개편되었다가, 2010년 청소년·가족 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아 다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었음.⁶⁸⁾

68) 참고: 여성가족부 변천 연혁

- ▶ '98.02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신설
- ▶ '01.01 여성부 신설
- ▶ '04.06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육업무 이관
- ▶ '05.06 여성가족부로 개편
- ▶ '08.02 여성부로 개편(보육·가족업무 보건복지부로 이관)
- ▶ '10.03 여성가족부로 개편(청소년·가족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현 여성가족부는 「정부조직법」 및 「여성가족부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에 관한 사무 외에도 양성평등의식 교육·홍보,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에 관한 사무 등을 그 소관 업무로 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 주요 조직 및 기능 】

조 직	주요 기능
여성정책국	▶ 여성정책 기획·조정 ▶ 성인지 제도 운영 ▶ 여성 인력 개발·활용 지원 ▶ 경력단절 여성 지원 ▶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 청소년정책의 기획·종합 ▶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지원 ▶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관리 ▶ 청소년 상담·복지 ▶ 학교밖 청소년 지원 ▶ 청소년 보호환경 조성 정책 수립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 가족정책 및 한부모 가족 지원 ▶ 가족친화 문화조성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지원 및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권익증진국	▶ 여성·청소년 등의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기획·조정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 가정폭력·스토킹 예방·피해자 보호 ▶ 이주여성·여성장애인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 북한이탈여성 권익보호 ▶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현재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여성·가족에 관한 사무만 관장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여지를 줄 수 있고, 그 대외 영문명칭(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에서는 이미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의 기능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나 책임행정 제고 등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

해 보임.⁶⁹⁾

뿐만 아니라 성별격차 완화,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인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성평등 문화·협력, 성별 균형, 경제활동 촉진 등의 성평등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⁷⁰⁾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 추진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 보호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로 인한 젠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성평등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정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이후, 여성정책국을 확대하여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고, 경제활동 촉진, 경력이음지원 등 균형고용 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해 균형고용정책관을 신설⁷¹⁾하는 구체적인 조직개편을 예정하고 있음.

참고로, 여성가족부의 명칭 및 소관 사무의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4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69)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의 명칭에 ‘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명기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70) ‘어떤 성평등가족부가 필요한가 -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 2407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9.16.

7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소관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

【 성평등가족부 관련 정부조직법안 계류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204412	전진숙의원	24.9.27.	•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 ※ 기능상 조정은 없음
2211320	김한규의원	25.7.7.	•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 여, 성평등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며,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함
2212730	강준현의원	25.9.5.	•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
2212859	정춘생의원	25.9.10.	•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 소관사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고용· 임금에 관한 사무’를 추가

차.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개정안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국가데이터처) ①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통계·데이터 총괄·조정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처를 둔다. ② 국가데이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통계청은 1945년 미군정청 서무처의 통계서로 시작한 이후, 1948년 공보처(국무총리 소속) 통계국, 1955년 내무부 통계국으로 소속을 옮긴 바 있으며, 1961년 경제기획원 통계국으로 소속을 변경한 후에는 1990년 통계청 개편을 포함하여 경제기획원장, 재정경제원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 부처에 소속되었음.

1961년 이후 우리나라의 통계체제는 국가의 경제발전과 궤를 같이 해왔고,⁷²⁾ 지난 시대에는 경제통계가 중요하여 경제 부처 소속으로 머물러 있었으나,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데

72) ‘한국의 국가통계체제에 대한 소고’,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3호,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2. p.419-446.

이터가 핵심 자산이 되는 시대에서는 모든 정책 분야별 데이터가 중요하고 공공·민간에서 데이터 활용의 수요 증가 및 그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 정부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등에 데이터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데이터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공공·민간데이터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계 등이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 대한 지적이 있음.⁷³⁾

한편,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국은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총괄 기구를 설치하고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⁷⁴⁾

이에 개정안은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여 인공지능 대변환에 맞춰 공공·민간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여러 부처에 분산된 통계 등 데이터를 연계하여 공유·활용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부 혁신 및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73) "국가 통계데이터 칸막이에 가로막혀...통계청 '통계처'로 승격 필요", 경향신문, 2022.4.1., "'통계청을 통계데이터처로' 국가데이터 추진체계 개편 머리맞댄다", MTN뉴스, 2022.4.1., "데이터 거버넌스 새판 짜다...정부, '국가데이터처'로 컨트롤타워 구축", ZD넷 코리아, 2025.9.8.,

74) '카드뉴스로 보는 DATA ECONOMY Global Policy Trends in US, EU, Japan, China', 한국 데이터산업진흥원, 2022.6., '국내외 데이터법·정책 분석 및 시사점 : 미국, 영국,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021」 vol.28, no.2,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전환에 따른 주요국 정책 거버넌스 비교 연구, 한국행정학회, 이해영, 2020. 등 참조

다만, 국가데이터처 신설 시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데이터 정책 유관 부처와 기능상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기제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⁷⁵⁾

참고로, 통계청을 통계관리처로 승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건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국가데이터처 관련 정부조직법안 계류 현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제안일자	주요 내용
2205104	구자근의원	24.10.31.	•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

75) 예를 들어,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구데이터 정책 총괄 책임을 맡고 있으나, 국가데이터처가 범정부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경우 국가연구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경계에서 기능 중복 및 협의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DataON 참고).

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

개정안은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려는 것임
(안 제2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조(지식재산처) ①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칙	
제2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승계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3조 제1항에 관한 사무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30조 제1항에 관한 사무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무	지식재산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1조제1항에 관한 사무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3조제1항에 관한 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이 법 제45조에 관한 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성평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의 소관사무	국가데이터처장
특허청장의 소관사무	지식재산처장

제6조(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에는 종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자율주행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분야별 특허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특허 동향 분석과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산업 구조 혁신과 기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⁷⁶⁾

특히 급변하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 행정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여 국내 기업의 특허권 확보 및 기술 보호를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⁷⁷⁾

이에 개정안은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승격⁷⁸⁾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행정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다수 부처에 분

76) “‘AI·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 우선심사’…특허청 심사조직 확대·개편”, 경향신문,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4.2.12. 등 참조

77)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2.12.,

78) 정부 조직상 ‘처’는 특정 정책에 대해 부처 간 종합·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됨.

산된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적 조정·협력과 관련 정책 수립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⁷⁹⁾

이에 더하여 개정안은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① 기존 특허청은 현행법 제38조제4항 및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특허 업무 외에도 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② 기관의 영문명칭으로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사용하고 있으며, ③ 그 소속기관으로 ‘국제지식재산연수원’⁸⁰⁾을 두고 있는 등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이미 혼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기관 명칭의 통일성 및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기관 명칭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일본·EU·독일 등은 ‘Patent’라는 용어를, 영국·캐나다·중국·프랑스 등은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79) “지식재산처 설립, 국가 경쟁력의 분수령”... 변리사회·서비스업계, 정부조직 개편안 환영”, 특허뉴스, 2025.8.20., ““지식재산처” 설립 가시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아우르는 조직돼야!”, IPDaily, 2025.8.20., “지식재산처, 기술주권 지키는 사령탑 돼야”, 전자신문, 2025.9.5., “국가 지식재산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손승우, 2020.12.20. 등 참조

80)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직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특허청 소속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교육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또는 개발도상국에서 요청하는 외국인 지식재산권 업무종사자에 대한 교육
3. 변리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교육

【 기관명에 ‘특허’ 또는 ‘지식재산’ 사용 관련 해외사례 】

국가	기관명(‘특허’)	국가	기관명(‘지식재산’)
미국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영국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일본	Japan Patent Office	중국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유럽연합 (EU)	European Patent Office	캐나다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독일	Deutsches Patent-und Markenamt	프랑스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스웨덴	Patent-och registreringsverket	호주	IP Australia
-	-	싱가포르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다만,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지식재산처의 소관사무에 기존 특허청의 소관사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무)와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열거하고 있으나,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포섭하는 개념이라는 점,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용어의 통일성 및 중복성 측면에서 “지식재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를 “지식재산”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임.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는 “지식재산”이라는 용어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을 포섭하는 개념임.

참고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⁸¹⁾,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⁸²⁾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⁸³⁾ 등 유사입법례가 있음.

둘째, 안 부칙 제6조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으로 특허청이 국가지식재산처로 승격 시 종전 책임운영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조제1항⁸⁴⁾)으로서 지위를 자동

8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국가전략기술 관련 현황의 조사·분석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략연구사업의 중복투자 방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8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①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분석

83)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권접권(著作隣接權)·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8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②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의 지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속책임운영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
2. 중앙책임운영기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청(廳)으로서 제4조에 따라 대통령

상실하게 됨으로써 당해연도에 책특회계를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바, 당해 회계연도에도 계속해서 책특회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회계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임.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책특회계는 「국가재정법」 제4조⁸⁵⁾ 및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⁸⁶⁾에 따라 준용되는
제27조⁸⁷⁾에 따라 설치·운영되는바, 특허청은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서
책특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⁸⁸⁾ 정부조직 개편 시 지식재산처는

령으로 설치된 기관

제4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해제) ① 책임운영기관은 그 사무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맞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

1.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성과 측정기
준을 개발하여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사무
2.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무

85)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
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86)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
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
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8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4조제1항제2
호의 사무를 주로 하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
관특별회계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속책임운영기관(이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변경이 곤란한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
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별도의 책임운영기관 항목을 설치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에
준하는 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8조(계정의 구분) 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별로 계정(計定)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정의 명칭·내용과 그 밖의 계정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회계의 예산 및 결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88) 최근 3년간 특허청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특허청 계정) 규모는 2023년 7,390억원, 2024년 7,017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책특회계를 운영·관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경과조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겠음.

다만,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안 부칙 제6조 중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기관”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를 “같은 법 제48조제1항⁸⁹⁾에 따라 준용되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로, “당해 회계연도”를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339

억원, 2025년 6,985억원임.

89)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예산 및 회계) ①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장제5절의 규정(제30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 제29조의2,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 제35조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제33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서 “심의회”는 각각 “운영심의회”로 본다.

참고1

정부조직법 外 법률 주요 개정사항

연번	구 분	개정사항(안)	상임위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제3조)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제4조) 금융감독위원회의 구성 ▶(제23조의2)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치 ▶(제50조의2)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설립 ▶(부칙) 다른 법률의 개정(155개), 위원장 인사청문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정무위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5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1-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1-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1-4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4조)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34조의2) 임직원에 대한 제재	
1-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3조) 감독	
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제52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한 조치	
1-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9조) 감독 및 검사	
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5조) 감독·검사 등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 ※ 방통위설치법 폐지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사무조직 ▶(부칙) 다른 법률의 폐지(방통위설치법), 다른 법률의 개정(43개) 등	과방위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2) 운영위원회의 소관사무 ▶(제9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 조직과 운영 등	기재위
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2)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기재위

자료: 행정안전부